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히하고, 대통령령에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 신청 등 절차,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공사여건 상 평면환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제도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평면환승 의무화 제도 대신 환승편의성 검토제도를 활용하도록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 삭제(안 제4조)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하나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평면환승 방식을 의무화하는 조문 삭제

나.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의2)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 절차, 결과 통보, 사후 이행계획 작성 등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7. ~ 2024. 1. 16.)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1514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광역교통 갈등 조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이하 “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갈등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이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갈등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가 갈등 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갈등 당사자에 속한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법 제9조의6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4항제3호다목 중 “법 제2조제2호마목”을 “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조제2호바목”을 “법 제2조제2호사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4조(광역철도) ①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그 환승 방식은 평면환승 방식(환승 시 환승통로의 이용 없이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환승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	3. ----------

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구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면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정차 시간을 계산한다.	---------- ---------- ---------- ---------- ---------- ---------- -------. <후단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광역교통 갈등 조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이하 “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갈

	등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이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갈등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가 갈등 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갈등 당사자에 속한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법 제9조의6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광

	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다. 법 제2조제2호바목 ----------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사목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050